

■ 신청대상 및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대 상 및 자 격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인천시, 서울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당첨자 선 정 방 법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기관에서 확인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만 신청이 가능 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 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은 추첨에 의함

■ 구비서류

구비서류	첨부 대상자	내용
특별공급신청서	모든 신청자	견본주택 비치
무주택서약서	모든 신청자	견본주택 비치
무주택입증서류	무주택서약서로 접수 후 전산검색 결과에 따라 계약 시 구비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주소지 기준 무주택 입증서류 추가 첨부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	모든 신청자	장애인은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관리명단으로 접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모든 신청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표등본 1통	모든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1통	해당자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자
제3자 대리신청서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으로 간주)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건본주택 비치) -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인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일반특별공급 접수가 가능합니다.

※ 최저층 우선배정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록증 발급자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문의 1544-6500